

중재비용에 관한 고찰

전 병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재에서도 비용의 지출이 있게 된다. 통상 ① 중재인의 보수·비용, ② 중재기관의 비용, ③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당사자가 지출하게 된다.

중재비용과 관련하여 2016년 개정 중재법은 제34조의2에서 중재비용의 분담이라는 제목하에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분담이 정하여지기 위한 전제가 되는 중재비용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는 중재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하지 않다.

중재를 이용함에 있어서 중재비용의 절대적 액수뿐만 아니라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의 불확실성, 당사자 사이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보편적 방법이 결여되었다는 점 등과 관련하여 중재비용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여러 중재 관련 규율 등을 통하여 중재절차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당사자 사이의 분담이 정하여지기 위한 전제가 되는 중재비용의 범위, 당사자 사이에서의 중재비용의 분담, 중재비용의 확정과 상환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주제어: 중재법, 중재비용, 중재인의 보수·비용, 변호사보수, 중재비용의 분담, 패소자부담의 원칙,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schon@cau.ac.kr)

목 차

I. 시작하며

II. 중재비용의 범위

1. 관련 법제의 동향
2. 중재비용의 종류
3. 중재비용의 예납·담보

III. 당사자 사이에서의 중재비용의 분담

1. 의의
2. 중재비용의 내역 제출
3. 중재비용의 부담
4. 중재권한을 부정한 경우에 중재판정부의 중재비용에 관한 판단

IV. 중재비용의 상환

1. 의의
2. 중재비용의 확정
3. 중재비용의 추심
4. 집행결정

V. 마치며

I. 시작하며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¹⁾ 중재에서도 비용의 지출이 따르게 된다. 중재절차를 실시함에 있어서 단계 단계마다 많은 적든 비용이 필요하게 되

1) 소송에 필요한 비용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나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 이외에 넓게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당사자가 실제 법원에 출석하기 위하여 일을 쉬어야 하는 등 소송에 필요한 시간이나 피고로 소송에 끌려 들어간 등의 정신적 고통 등 보이지 않은 비용도 포함된다. 그리고 당사자는 이러한 직접적 비용 이외에도 소송제도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납세라는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金子宏直, 民事訴訟費用の負擔原則, 勁草書房, 1998, 2쪽. 한편, 사회적으로는 오판의 비용도 존재한다. 전병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간의 검토”, 「민사소송」 제13권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9. 11, 149쪽.

는데,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절차를 수행하므로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중재기관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소송에서의 법관의 보수 및 법원 시설의 사용료 자체는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비용으로 당사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원고가 인지대를 내기는 하지만, 법원청사의 유지나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와 같은 사법제도를 설치·유지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통상의 세입에 의해 국고에서 부담한다).

그런데 중재에서는 특히 중재인의 보수가 당사자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되는 등 소송과 비교하여 중재 쪽의 비용이 고액이 될 수 있다.²⁾ 비용의 절대적 액수뿐만 아니라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의 불확실성, 당사자 사이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보편적 방법의 결여 등과 관련하여 중재를 이용함에 있어서 중재비용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중재비용과 관련하여 2016년 개정 전 중재법 자체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2016년 개정 중재법(이하 중재법이라고 한다)^{은3)} 제34조의2에서 중재비용의 분담이라는 제목하에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⁴⁾ 물론 특별한 규정이 없던 개정 전 중재법하에서도 실무상으로는 가령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에 대한 결정을 하여 왔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실무상으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중재비용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중재비용이 상당히 고액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으로는 李鎬元, “國際商事紛争の解決方法としての國際仲裁について - 國際仲裁手続の流れと國際仲裁の利点・問題点の検討を中心にして -”, 「法經論集」 제214호, 愛知大學法學會, 2018. 3, 146쪽. 또한 2018년 Queens Mary University of London,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에서 행한 설문조사도, 국제중재의 단점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비용을 들고 있다. *2018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3) 2006년 개정 UNCITRAL(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 국제상사중재모델법을 수용한 2016년 개정 중재법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는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2권, 박영사, 2019, 93쪽 이하 참조.

4)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개정 전 중재법 하에서 중재비용 규정 신설에 관한 연구로는 강병근, 중재비용 규정 신설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2. 12, 참조. 그리고 2016년 개정 중재법에서 중재비용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 관한 소개는 석광현, 앞의 책, 123-124쪽. 아울러 2016년 개정 중재법 제18조의6 제1항에서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과 동조 제2항에서 위 비용의 지급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II. 중재비용의 범위

1. 관련 법제의 동향

1985년 UNCITRAL(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 모델 중재법이나 2006년 개정 UNCITRAL 모델 중재법은 중재비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이를 채택한 국가의 입법에 맡기고 있다.⁵⁾ 이는 비용에 관하여 주요 국제중재규칙이 자세히 규정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⁶⁾

각 국가의 입법으로는, 독일 민사소송법(ZPO) 제1057조(비용결정)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에서 중재신청 또는 답변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당사자에 의해 발생된 비용을 포함한 중재비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부담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해당 사건의 여러 사정, 특히 절차의 결과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중재절차의 비용이 확정된 범위 내에서 중재판정부는 또한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도 결정하여야 한다. 비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중재절차가 종료되어도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결정은 별도의 중재판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⁷⁾ 위 규정은 당사자들이 중재비용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⁸⁾

또한 일본 중재법은 제47조에서 중재인의 보수, 제48조에서 중재비용의 예납, 제49조에서 중재비용의 분담 등 중재비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⁹⁾

2. 중재비용의 종류

중재비용과 관련하여 중재법은 제34조의2에서 중재비용의 분담에 관한 규정을

5)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econd Edition, 2014, p. 3085*.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중재법은 중재인이 중재비용과 법적 비용에 대하여 판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점에 의문이 여지가 없다. Gary B. Born,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2012, p. 298*.

6) 석광현, 앞의 책, 123쪽.

7) 독일 민사소송법(ZPO)은 제10편(Buch 10)에서 중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문 번역은 법무부, 세계중재법규 제1권, 박영사, 2014, 169쪽 이하 참조.

8) *BT-Drucks 13/5274 S 57. Hk-ZPO/Saenger, § 1057 Rn. 1.*

9) 관련하여 일본 중재법은 중재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동법 제47조)을 중재비용의 규정 앞에 두고 있으므로 중재인의 보수는 중재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小島武司/高桑昭, 注釈と論点 仲裁法, 青林書院, 2007, 283쪽.

두고 있지만, 중재절차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당사자 사이에 분담이 정하여지기 위한 전제가 되는 비용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중재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하지 않다.

제3자의 판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중재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이지만, 중재법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을 참조할 수는 있을 것인데, 소송비용은 통상 법원에 지급하는 재판비용과 당사자가 스스로 지출하는 당사자비용으로 나뉜다. 재판비용은 당사자 등이 소송 그 밖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소장 등의 신청서에 인지를 첨부하는 형태로 납부하는 수수료와 미리 그 개략적으로 계산액을 예납하여야 하는 서류송달비용, 증거조사비용(증인 등의 여비, 일당, 숙박료, 법관 등의 여비, 숙박료) 등이다. 이와 같은 비용은 그 비용이 필요한 행위를 요청한 사람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일단 법원에 내지만(인지 첨부 또는 예납), 최종적으로 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로부터 상환을 받게 되는 비용이다. 한편, 당사자비용은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기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직접 자신이 제3자에게 지출하는 소송서류를 작성하는 비용,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여비·일당·숙박료, 변호사보수 등이다.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해서 지출하는 구체적인 비용의 항목이나 그 액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으로서 「민사소송비용법」과 「민사소송비용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비용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당사자비용의 항목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¹⁰⁾

소송비용과 유사하게 중재비용은 통상 ① 중재인의 보수·비용,¹¹⁾ ② 중재기관의 비용, ③ 당사자의 비용 등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¹²⁾ ①과 ②가 소송에서의 재판비용에, ③이 소송에서의 당사자비용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분쟁의 해결을 중재기관의 중재에 맡긴 때에 특약이 없는 한 중재기관이 정한 중재규칙이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 되므로 비용에 관련된 규정도 가령 대항상

10) 소송비용실무연구회, 소송비용실무, 사법연구지원재단, 2008, 7쪽 이하 참조.

11) 그런데 중재절차의 비용과 중재인보수는 그 성질, 근거나 다르므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도 있다. 小山昇, 仲裁法[新版], 有斐閣, 1983, 278면. 그리고 중재인보수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은 중재인계약의 상대방(중재절차의 당사자 또는 중재기관)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중재인보수는 해당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아니므로 중재인(중재판정부)은 중재판정에서 중재인보수의 지급을 명할 수 없고, 따라서 중재인보수의 지급청구에 있어서는 통상의 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小島武司/高桑昭, 앞의 책, 285-286쪽.

12) 영국 중재법 제59조는 중재비용으로 ① 중재인보수 및 비용, ② 관련 중재기관의 요금 및 비용, ③ 당사자의 법적 또는 그 밖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중재원의 중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상사중재원이 정하는 규칙에 따르게 된다.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¹³⁾ 제52조 제1항을 보면 중재비용은 관리요금, 소요 경비, 중재인 수당(보수),¹⁴⁾ 그리고 변호사비용과¹⁵⁾ 같이 그 밖에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⁶⁾ 그리고 동 규칙 제41조 제5항에서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비용 및 그 분담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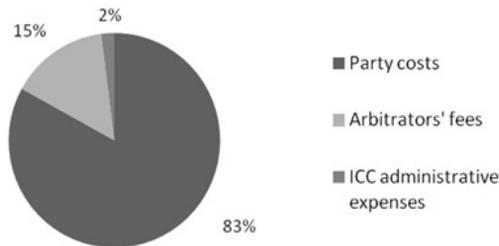
생각건대 당사자의 합의에 기한 자주적 분쟁해결절차라는 중재의 성질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의 분담이 정하여지기 위한 전제가 되는 비용의 범위를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¹⁷⁾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를 중재판정부가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3)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중재규칙 이외에 국제중재규칙도 마련되어 있다.

14) UNCITRAL 중재규칙은 1976년 처음부터 중재비용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현행 중재규칙 제40조에 서도 중재인의 보수는 중재비용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중재규칙의 내용은 <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uncitral/en/uncitral-arbitration-rules-2013-e.pdf>.

15) 그런데 상사중재원의 현행 중재규칙이 아닌 종래의 상사중재규칙 하에서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에 대한 중재판정시 판정주문의 내용으로 분쟁내용에 대한 판단부분과 상사중재규칙 제9장 소정의 중재비용의 부담비율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하고 그 이외에 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판정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상사중재규칙 제9장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중재비용에는 변호사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는 판결이 있었다(서울지방법원 1998. 11. 17.자 98카기 10876 결정). 관련하여 김홍규, “변호사보수가 중재비용에 산입되느냐에 대한 중재사례 해설”, 『중재』 312호, 대한상사중재원, 2004. 6. 6쪽 이하 참조.

16) SIAC(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2016년 중재규칙 제35조 제2항은 중재비용에 중재판정부(긴급중재인)의 수수료 및 경비, 관리요금,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가의 비용 및 합리적 필요가 있는 그 밖의 지원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 중재기관인 일본상사중재협회(JCAA)의 상사중재규칙(2019. 1. 1. 개정 시행) 제80조 제1항에서는 중재절차의 비용에는 중재인 보상금, 중재인 경비, 관리요금, 그 밖의 중재절차를 위한 합리적 비용 이외 당사자가 부담하는 대리인 그 밖의 전문가의 보수 및 경비로 중재판정부가 합리적 범위 내라고 인정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보면, ICC(국제상업회의소)가 2012년에 실시한 221개 중재판정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재비용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중재에 지출한 비용이 중재에 관한 비용 전체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Commission Report: Decision on Cost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5.*



<https://library.iccwbo.org/content/dr/COMMISSION_REPORTS/CR_0049_Decisions.htm>
 17) 中村達也, 『仲裁法の論点』, 成文堂, 2017, 370쪽.

(1) 중재인(중재판정부)의 보수·비용

본래 중재인이 보수를 받을지 여부(중재인의 보수는 유상의 경우도 무상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당사자와 중재인 사이의 계약(중재인계약의 당사자는 중재합의의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에 의하여 정한다. 즉, 중재인은 중재인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당사자와 중재인 사이의 계약은 위임계약(준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당사자가 중재인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채무의 성질을 가진다고 풀이할 것이다.¹⁸⁾

중재인과 당사자 사이에 중재인의 보수에 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중재판정부)이 보수를 결정하게 된다. 중재인이 가지는 능력과 경험, 들인 시간과 노력, 사안의 난이도 등 여러 사정으로부터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¹⁹⁾

기관중재의 경우는 해당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 또는 해당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에 따르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는 것에 의하여 중재인 수당(보수)에 관한 중재기관의 규정이 그 합의의 내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가령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요금표[별표] 2. 중재인의 수당)을 보면,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중재인의 수당은 사무국이 분쟁의 성격과 신청금액, 중재인이 중재에 소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시된 표에 따라 신청금액에 따른 최소액과 최대액 사이에서(표를 보면, 가령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최소 700,000원에서 최대 1,300,000원) 결정한다고²⁰⁾ 규정하고 있다.²¹⁾

18) 일본 중재법 제47조 제1항은 중재인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재절차의 당사자 또는 중재기관과 중재인의 계약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풀이할 것이다. 小島武司/高桑昭, 앞의 책, 284쪽.

19) 일본 중재법 제47조 제2항은 합의가 없는 때에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인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이 경우에 그 보수는 상당한 액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상당성에 대하여 당사자와 중재인 사이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중재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초과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近藤昌昭 외 4인, 仲裁法コンメンタル, 商事法務, 2003, 281쪽.

20) 사무국은 일반적으로 최소액과 최대액 사이의 평균금액을 예납요청하며 이후 분쟁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증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평균금액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21) ICC(국제상업회의소) 2017년 중재규칙 제38조를 보면, 중재인의 보수는 산정표(scale of costs=일람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당 사안의 특수사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된 액보다 더 많거나 적은 금액을 중재인 보수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CC 중재규칙 부록(APPENDIX) III에는 ICC 중재에서 사용하는 산정표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홍콩국제중재센터(HKCIAC) 2018년 중재규칙(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제10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의 수당 및 경비에 대하여 당사자가 별표 2에 따른 시급 또는 별표 3에 따른 분쟁가액에 따른 금액 사이의 선택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상사중재규칙은 중재인 보수(보상금)와 관련하여 기존 규칙과 같이 시간제보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합리화 차원에서 개정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김영주, “2019년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중재제도의 개

그리고 중재인의 보수 이외에 중재인의 비용으로는 중재인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 숙박비, 통신비 등이 있고, 중재판정부가 선임한 감정인의 보수·비용 등도 이에 속한다.

가령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54조를 보면 중재인 및 서기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 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중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일단 그 당사자가 예납하도록 하고 있다.

(2) 중재기관의 비용

중재기관의 비용은 당사자가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중재기관에 대하여 관리요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가령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53조 제1항을 보면 관리요금은 신청인이 관리요금표(요금표[별표] 1. 관리요금)에 따라 사무국에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표를 보면, 관리요금은 최저 50,000원을 하한액으로, 최대 1억 5천만원을 상한액으로 한다).

(3) 당사자의 비용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다. 통역·번역비, 교통비 등에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인인 당사자의 임원이나 법무담당자의 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²²⁾

가령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52조는 제56조의 기타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을 중재비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변호사의 보수

중재절차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는 대리인 변호사의 보수(비용)가 당사자의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그 전액은

혁동향”, 「중재연구」 제29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9. 6, 141쪽 이하 참조.

22) 실무상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중재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의 사내 변호사 또는 관리담당자가 투입한 시간이나 기타 비용 등도 중재비용의 일부로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임성우, 국제중재, 박영사, 2016, 313쪽.

아니지만 대법원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고 각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이른바 「American Rule」이라고 부른다)가²³⁾ 아닌, 일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English Rule」이라고 한다). 중재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중재비용은 변호사보수를 포함한다고 본다.²⁴⁾

대체로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서는 「English Rule」을 채택하고 있다. 가령,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56조를 보면 변호사비용을 중재비용으로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분담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보수의 중재비용 산입 기준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라도, 중재판정부는 재량에 의해 합리적이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보수를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일응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중재절차의 특성(단심제, 단기간의 심리 일정, 구술심리의 강도, 사건의 복잡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보수를 증감할 수도 있다고 한다.²⁵⁾

23) American Rule의 역사는 다소 불명확하나, 1796년에 연방대법원의 Arcambel v. Wiseman사건(3 U. S. (3 Dall.) 306 (1796))에서 제정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변호사보수의 패소자부담을 인정하지 않는 American Rule이라고 부르는 쌍방부담의 원칙이 확립되었고, 19세기 전반의 변호사 수수료 규제 붕괴로 인하여 American Rule이 진화하였다고 본다. *John Leubsdorf, Toward a History of the American Rule on Attorney Fee Recovery, 47 LAW & CONTEMP. PROBS. 9(1984)*. 우리와 달리, 일본은 재판비용은 기본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지만(일본 민사소송법 제61조), 이는 법원에 지급하여야 할 재판비용만으로 당사자가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는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이다. 입법례에 대하여 자세히는 전병서, 앞의 글, 168쪽 이하 참조.

24) 석광현, 앞의 책, 124쪽. 국제중재에서도 변호사보수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지급한 관리비용 기타 중재절차상의 비용이 아닌 당사자비용(parties' cost)을 구성하는 가장 큰 비용에 해당하고, 그 의미는 “중재 관할지에서 법률 자문을 위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여 사건의 대리(representation)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 화우, 국내중재규칙상의 변호사보수의 중재비용 산입 및 판단기준 검토, 2017, 13면. 독일에서도 중재비용에는 변호사비용이 포함된다. *Hk-ZPO/Saenger, § 1057 Rn. 3*, 독일 변호사보수법(Rechtanwaltsvergütungsgesetz. 줄여서 RVG) 제36조 제1항에 의한 수수료가 중재비용이 된다. *Hk-ZPO/Saenger, § 1057 Rn. 11*.

25)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에서 변호사 보수의 중재비용 산입에 관한 절차 안내.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2019년 상사중재규칙 제80조 제1항에서도 당사자가 부담하는 대리인의 보수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중재절차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홍콩국제중재센터(HKCIAC) 2018년 중재규칙(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제34조 제2항은 중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리인의 선임 기타 조력을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중재에서 변호사보수는 일반적으로 ① 해당 국제중재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지출된 변호사보수 중, ② “합리적인 수준 또는 상당성이 인정되는 수준”의 비용만이 보전 가능한 것

3. 중재비용의 예납·담보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중재비용의 대략적 금액을 미리 납부시킨다. 실제 중재비용을 분담하는 것과 중재비용을 예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²⁶⁾ 이 예납은 소송의 경우의 비용의 예납(민사소송법 제116조 참조)과 마찬가지로 중재비용을 미리 납부시키는 것에 의하여 그 지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중재비용의 예납에 대하여는 중재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²⁷⁾

통상 중재기관의 규칙에서 비용의 예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²⁸⁾ 가령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52조 제2항을 보면 당사자는 사무국이 동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에서 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 또는 사무국은 중재절차를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부에 있어서 그 기한, 방법 등에 대하여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중재절차를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고, 당사자에게 절차수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에 의하여 중재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가 효력을 잃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는데, 중재계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²⁹⁾

그리고 중재비용의 담보에 대하여는 중재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중재법 제18조의4에 기하여 중재판정부의 잠정적 보전조치에 의하여 중재판정부가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³⁰⁾

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 화우, 앞의 연구보고서, 2017, 13쪽. 또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53조에서도 대체로 마찬가지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해설에 의하면 재판 사정에는 중재절차에서 청구의 인용 정도, 신청인이 중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중재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발생하도록 유발한 당사자인지 여부, 중재절차에서 협조한 당사자인지 여부 등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2016 국제중재규칙 해설서, 2018, 139쪽.

26) 강병근, 앞의 연구보고서, 64쪽.

27) 관련하여 일본 중재법은 제48조에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중재절차의 비용의 개산액으로 그 정하는 금액을 당사자에게 예납하는 것을 명할 수 있고(동조 제1항), 그 예납이 없는 때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중재절차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동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예납은 중재신청인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당사자 양쪽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小島武司/猪股孝史, 仲裁法, 日本評論社, 2014, 582쪽. 제48조의 규정으로부터는 예납할 중재비용에 중재인의 보수(중재판정부의 비용)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납의 목적에 비추어 포함된다는 입장으로는 三木浩一/山本和彦, 新仲裁法の理論と実務, 有斐閣, 2006, 405쪽 참조.

28)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에서도 2017년 중재규칙 제37조를 보면, ICC중재재판소가 결정한 중재인 보수 및 비용, 관리비용의 개산액(추정금액)을 선급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채택되어 있다.

29) 小島武司/高桑昭, 앞의 책, 287쪽.

30) ICC(국제상업회의소) 2017년 중재규칙 제28조하에서도 임시적 처분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일반적 권한

III. 당사자 사이에서의 중재비용의 분담

1. 의의

중재절차의 이용자인 당사자가 그 중재비용을 부담하는데,³¹⁾ 우선 당사자 양쪽의 부담인가, 한쪽만의 부담인가의 문제가 있고,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 가운데 승소자와 패소자가 어떻게 그 비용을 분담하는가이다. 즉, 당사자 한쪽만의 부담이 된 경우에는 다른 쪽 당사자가 지출한 몫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는 부담 당사자에게 상환을 구하는 문제가 있게 되고, 당사자 양쪽의 부담이 된 경우에서도 부담 비율을 넘어 지출한 몫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게 된다.

2. 중재비용의 내역 제출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을 정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부담한 중재비용을 모두 계산하여 중재판정부에 보고하고, 중재판정부가 그 액수를 중재판정부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중재비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³²⁾ 중재판정부가 스스로 중재인의 보수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감정비용의 액수·통역비용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 또는 중재인의 여비·일당·숙박료 및 중재인의 필수경비는 중재판정부가 그 근거가 될 자료를 직접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비용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는 그 산정의 근거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 관리사무자 등에게 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증거서류를 제출시킬 필요가 있다.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액을 확정할 권한을 가진 이상, 위 제출을 구할 권한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필요하다고 보이는 청구서나 영수증 등 산출근거가 되는 증거서류, 각 비용이 필요한 이유서 등의 제출을 구하고, 이에 기하여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에 중재비용에 대한 담보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본다. 임성우, 앞의 책, 159쪽. 일본에서도 위 우리 중재법 규정과 유사한 일본 중재법 제24조 제2항에 기하여 위와 같이 풀이된다고 본다. 小島武司/高桑昭, 앞의 책, 158쪽.

31) 물론 이에 앞서서 중재절차의 이용이 무상인가, 유상인가에 따라 중재비용이 당사자의 부담이 되는가, 당사자 이외의 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의 부담이 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32) 주로 중재 대리인이 내역을 요약한 표와 함께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진술서(affidavit)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무례라고 한다. 김갑유 외 3인, 중재실무강의(개정판), 박영사, 2016, 217쪽.

중재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금액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³³⁾

대법원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를 기준으로 비용으로 산정하는 소송의 경우와 달리, 중재의 경우는 쌍방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각종 비용에 관한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실제 지출 내역을 기초로 합리적 범위에서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중재비용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³⁴⁾

3. 중재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어떠한 종류의 비용을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가의 문제가 있고, 이어서 이를 당사자 쌍방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비율로 부담할 것인가, 분담의 판정을 누가, 어떠한 형식으로 할 것인가(중재판정의 일부로 할 것인가, 이와 별개 독립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 규칙으로,³⁵⁾ 중재법 제34조의2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⁶⁾ 비용의 분담은 판단권자인 중재판정부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중재법에 의하여 이러한 권한이 중재판정부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에서 또는 이와 별도의 비용에 관한 판정에서 비용의 분담을 결정하면 된다.³⁷⁾

이 경우에 비용의 분담을 정함에 있어서 합의에 의하여 중재라는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한 중재에 있어서는 소송에서와 같은 패소자부담의 원칙을³⁸⁾ 유추적용하는 것

33) 中村達也, 앞의 책, 374쪽.

34) 김갑유 외 3인, 앞의 책, 27쪽.

35) 석광현, 앞의 책, 124쪽.

36) 중재비용의 당사자 사이에서의 분담은 우선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다. 그 합의는 비용부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Musiellak/Voit/Voit, 16. Aufl. 2019, ZPO § 1057 Rn. 2.* 당사자의 사적 자치가 넓게 인정되어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부담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이에 의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중재비용에 관한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중재법에 의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가령, 영국 중재법 제60조는 분쟁 발생 이전에 당사자들이 중재 결과가 상관없이 일반 당사자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임성우, 앞의 책, 311쪽.

37) 임성우, 앞의 책, 311쪽.

38)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즉, 본안의 패소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승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원칙이라고 부른다. 패소의 이유, 패소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기 때

이 상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패소의 결과책임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³⁹⁾ 그러나 중재에서도 원칙적으로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재판정의 승패에 따른 패소자부담의 원칙이 타당하고, 다만 중재판정부는 해당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의하여 비용의 분담을 정할 것이다.⁴⁰⁾ 실무적으로는 청구가 인정된 범위, 어떠한 절차상의 신청을 하여 기각된 사정, 당사자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절차를 지연시켰거나 과도하게 비용을 발생시켰다는 사정, 그 밖의 비용의 타당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부담판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⁴¹⁾

그런데 비용 가운데 중재인의 보수의 부담비율을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하여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중재인의 공평,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중재인이 부담비율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⁴²⁾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중재인의 보수의 부담비율을 그 밖의 중재비용과 합쳐서 결정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즉시 중재인의 공평, 공정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⁴³⁾ 그리고 중재인의 임무가 분쟁을 해결한다는 당사자 양쪽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보는 이상, 중재인의 보수에 대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부담비율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2분의 1씩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는데,⁴⁴⁾ 중재절차에서 공격방어의 결과, 자기의

문에 일종의 결과책임이다. 다만, 법원이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형태를 고려하여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가령, 법원은 불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소송의 지연을 생기게 한 승소 당사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동법 제99조, 제100조 참조). 또한 일부패소의 경우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동법 제101조).

39) 小山昇, 앞의 책, 285-286쪽. 한편, 일본 중재법 제49조는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당사자 사이에서의 분담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다고 하면서(동조 제1항), 그 합의가 없는 때에는 각자가 부담한다고(동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49조 제2항의 각자 부담의 규정에 따르면, 이 규정은 비용 가운데 당사자비용만의 분담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풀이한다. 三木浩一/山本和彦, 앞의 책, 409-410쪽 참조. 이렇게 풀이하는 경우에 그 밖의 중재판정부의 비용과 중재기관의 비용의 부담비율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여전히 그 결정이 문제가 된다.

40) 독일 민사소송법 제1057조 제1항은 해당 사건의 여러 사정, 특히 절차의 결과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usielak/Voit/Voit, ZPO, 16. Aufl. 2019, § 1057 Rn. 3. UNCITRAL(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제42조에서도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으로 하면서,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1) 김갑우 외 3인, 앞의 책, 242쪽. *Commission Report: Decision on Cost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5, p. 21*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① 당사자가 중재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② 적용 법률의 일반적 비용분담원칙, ③ 비용과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합의, ④ 관할권 등 예비 이슈 결정 시 발생하는 비용, ⑤ 당사자의 절차적 행동, ⑥ 발생한 비용의 합리성, ⑦ 사건의 법적 및 사실적 복잡성, ⑧ 당사자의 법률 수수료 및 비용(사외 변호사), ⑨ 각 당사자가 청구하는 비용 사이의 차이, ⑩ 다양한 유형의 비용의 회수 가능성 등이다.

42) 小島武司/高桑昭, 앞의 책, 285쪽.

43) 中村達也, 앞의 책, 371쪽.

주장이 인정된 당사자가 중재비용의 부담에 의하여 중재판정을 통하여 얻어진 경제적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중재에서도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⁴⁵⁾

한편, 중재기관의 중재에 따르는 경우에 위 비용의 분담 등의 문제도 중재기관이 정하는 중재규칙에 의하기로 맡긴 것이고, 통상적으로 해당 중재규칙에는 비용의 종류 및 부담의 정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재비용의 당사자에게의 부담도 해당 중재규칙을 적용하여 정하게 된다. 가령,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56조를 보면 검증, 감정, 증인신문, 통역 등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분담한다고 하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그 사안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 중 발생한 필요비용을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⁶⁾ 그리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맡긴 경우에 그 보수를 중재비용에 포함된다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는데, 위 국내중재규칙 제56조는 대리인 변호사의 보수도 부담의 대상으로 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위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41조 제5항에서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52조의 중재비용 및 그 분담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⁷⁾ 당사자는 심리종결시 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 시기까지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재판정부에 변호사 보수의 중재비용 산입을 신청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에서 변호사 보수의 분담비율에 관하여 결정한다고 한다.⁴⁸⁾

44) 小島武司/猪股孝史, 앞의 책, 580쪽.

45) 中村達也, 앞의 책, 373쪽.

46) 대한상사중재원 종전 중재규칙 하에서의 실무는 민사소송법 제98조의 예와 동일하게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각 당사자의 신청 중 인용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비용을 안분시켰다고 한다. 이완근, 「상사비용회수와 그 문제점」, 『동아법학』 제54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 757쪽. 대한상사중재원 현행 국제중재규칙 제52조 제1항에서도 중재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비용을 당사자 사이에 분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7) 또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52조 제2항에서도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릴 때에 중재비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2019년 상사중재규칙 제66조 제4항에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서에 제80조 제1항에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합계액 및 당사자 사이의 부담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8)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에서 변호사 보수의 중재비용 산입에 관한 절차 안내.

4. 중재권한을 부정한 경우에 중재판정부의 중재비용에 관한 판단

중재판정부는 중재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그 밖의 자기의 중재권한(중재절차에서의 심리 및 중재판단을 행하는 권한)의 유무에 대하여 판단을 나타내는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중재권한의 유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투고 있는 경우라도 중재판정부는 중재권한을 가진다고 판정한 경우에 절차를 진행하여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을 하게 된다.

만약,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중재관할을 부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중재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⁴⁹⁾ 중재판정부는 중재법에 의하여 주어진 고유권한에 의하여 중재비용에 관한 판정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재판정부의 자기의 중재권한의 유무에 대한 판정을 나타내는 권한(이른바 Competence-Competence)으로부터 파생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재비용에 관한 판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중재판정부가 중재권한을 부정하고 중재절차를 종료하는 때에는 중재의 신청을 받은 피신청인에게 중재비용을 부담시킬 것은 아니므로 중재판정부는 그 비용을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⁵⁰⁾

IV. 중재비용의 상환

1. 의의

중재비용은 중재절차가 종료하기까지는 당사자가 스스로 지출하거나 또는 중재인에게 지급할 것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채로 있게 되고, 중재절차가 종료하면 중재비용의 총액이 관념적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당사자가 분담하여야 할 비율 및 특히 당사자 한쪽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도 확정된다.⁵¹⁾ 상환액의 확정을 위하여 우선 중재

49) 2016년 중재법 개정 과정에서 규정의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임성우, 앞의 책, 311쪽. 싱가포르 국제중재법(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제10조 제7항은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50) 한편, 중재판정부가 중재권한을 긍정하고 중재판정을 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중재비용의 부담을 한 경우라도 이후 중재판정부가 중재권한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이유로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범위 내에서 중재절차는 무효가 되고, 피신청인은 그 지급한 중재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中村達也, 앞의 책, 376쪽.

51) 부담의 판단을 어떠한 형식으로 할 것인가(중재판정의 일부로 할 것인가, 이와 별개 독립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중재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일본 중재법 제49조 제3항은 중재판정부는 당

절차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당사자 사이의 부담이 정하여지는 전제가 되는 비용, 즉 당사자 사이에서 상환의 대상이 되는 비용의 범위, 그 부담비율을 어떻게, 누가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앞에서 언급하였다.

중재비용 상환액은 ① 중재비용의 총액을 산출하고, ② 당사자 한쪽만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과 액수를 확정하고, 이를 제외한 그 밖의 비용에 대한 부담비율을 정하고, ③ 당사자 각자가 스스로 지급한 비용액을 확정하고, ④ 스스로 지급한 비용액보다 부담 비용액이 적은 당사자에게 그 차액을 산출하여 그 액수를 중재비용 상환액으로 하는 수순을 따라 확정하게 될 것이다.⁵²⁾

당사자 한쪽만의 부담이 된 경우에는 다른 쪽이 지출한 비용분에 대하여 다른 쪽은 부담 당사자에 대하여 상환을 구할 수 있고, 당사자 양쪽 부담이 된 경우에도 부담비율을 넘어 지출한 비용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추심 절차가 문제된다.

2. 중재비용의 확정

경우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재비용액의 확정도 중재판정부(중재인)에게 맡긴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가장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⁵³⁾ 다만, 중재비용액의 확정을 하려면 일정한 형식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중재비용액을 확정하면 된다.

중재비용액 확정의 판정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판단으로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의 일부를 이룬다. 즉, 중재판정은 ① 중재신청된 분쟁에 대한 해결의 판정이 주된 것이고, ② 중재비용액 확정의 판정은 보조적이기는 하지만, 양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비용액 확정의 판정이 없이 중재신청된 분쟁에 대한 해결의 판정만으로 이루어진 중재판정은 그것으로서 성립은 하지만, 일종의 판단의 누락이고, 비용액 확정

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때는 해당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의하여 중재판정 또는 독립의 결정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독립의 결정으로 정한 경우는 당해 결정은 중재판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비용에 대하여만 그 부담비율과 상환액을 정할 수 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는 이 규정을 근거로 중재비용의 부담비율, 상환액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 中村達也, 앞의 책, 374쪽.

52) 小山昇, 앞의 책, 283쪽.

53) 다만, 중재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판정권이 부여되었는가, 아니면 중재제도상 판정권자인 중재판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아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것인가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中村達也, 앞의 책, 374쪽.

의 판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⁵⁴⁾

비용액 확정판단은 중재판정의 구성 부분이므로 그 확정 및 그 집행에 있어서 중재판정의 일부로서 법적 규제를 받는다. 그 결과 그에 대한 상소(통상의 불복신청)의 여지는 없게 된다. 중재판정부가 확정한 비용액수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할 방법으로, 우선 계산의 잘못, 오기 그 밖의 이에 유사한 잘못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재법 제34조에 기하여 중재판정의 정정을 중재판정부에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의 법의 적용·해석의 잘못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풀이된다.⁵⁵⁾

3. 중재비용의 추심

중재비용의 부분도 중재판정의 한 부분으로서 집행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그 비율을 정하는 데 그친 경우 경우는 그 자체로는 상대방에 대한 집행이 곤란하다. 중재절차에서 승소한 당사자로서는 중재판정문에 기재된 부담비율에 따른 중재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구체적 액수를 확정할 별도의 절차, 즉 중재에 있어서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와 같은⁵⁶⁾ 별도의 중재비용액 확정절차가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중재법에는 중재비용 상환액의 판단을 별개의 기관이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⁵⁷⁾ 중재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중재판정으로 정하자는 견해와⁵⁸⁾ 중

54) 중재판정부는 중재비용액 확정의 판단을 나타내지 않는 한 그 임무를 마친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小山昇, 앞의 책, 287쪽.

55) 中村達也, 앞의 책, 375쪽.

56) 민사소송비용의 재판에 있어서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는 물론 액수까지도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실무상 소송비용의 정함은 관행적으로 부담의 비율로 정하여지고(가령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구체적 액수의 확정은 특정하지 않고, 이에 관하여는 나중에 별도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 수소법원(사법보좌관의 직무이다.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이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민사소송법 제110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의 상환을 받는다(그러나 종전에는 상대적으로 액수가 소액이고, 서류의 제출절차 등이 번잡하기 때문에 실제 상환을 구하는 당사자는 많지 않았으나, 요즈음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소송비용의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는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57) 현재 우리나라 중재판정의 실무상 중재비용 회수를 위한 절차 등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변호사 보수를 특별한 이유 없이 회수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는 점 등은 문제이고, 또한 중재판정문의 주문에 중재비용의 부담비율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자체로는 상대방에 대한 집행이 곤란하여 문제라고 한다. 이완근, 앞의 글, 756, 759쪽.

재판정부가 중재비용의 분담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들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가⁵⁹⁾ 있었으나 2016년 개정 중재법에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⁶⁰⁾

생각건대, ① 소송에서와 같은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민사소송법 제110조 참조)을 마련하는 방법 또는 이를 준용 또는 적용하는 방법, ② 중재판정의 집행결정절차에서(중재법 제37조 제2항 참조) 그 자체의 신청비용과 함께 중재비용을 함께 확정하는 방법,⁶¹⁾ ③ 별도로 중재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보다는 중재판정부가 비용의 확정에 관한 판단을 법원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중재판정문에서 구체적 액수까지 명시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방법이 법원의 비용 확정에 맡기는 것보다 당사자의 임의이행을 더 쉽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⁶²⁾ 이 경우에 구체적 액수까지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중재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중재판정 또는 독립의 결정은 집행권원이 된다.

비용상환액의 명시에 있어서는 중재인, 증인, 감정인 등의 보수, 감정료 등 비용의 전액이 당사자의 한쪽에 의하여 이미 지급되고 있는 때에는 한쪽 당사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액수를 확정하면 되고, 이 경우에 상환액은 산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산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때에는 위 상환액의 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중재법 제32조 제2항)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의하여 상환액의 판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 취소에 의하여 상환액의 판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중재인의 그 부분의 의무가 아직 잔존하게 된다. 중재인은 다시 비용상환액의 판정을 내려야 한다.⁶³⁾

58) 독일 민사소송법 제1057조 제2항이 위와 같은 입장이다. 즉, 중재절차에 소요된 비용이 확정된 범위 내에서 중재판정부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금액에 대해서도 정하여야 하고, 중재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중재판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후자의 소요된 비용을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절차종료시 전문가, 증인, 절차담당자의 비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등과 관련이 있다. *Hk-ZPO/Saenger, § 1057 Rn. 9.*

59) 영국 중재법 제63조 제4항은 중재판정부가 상환청구 가능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판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0) 법무부, 조문별 개정이유서(2015) 참조, 석광현, 앞의 책, 124쪽.

61) 이러한 방식에 관한 소개로는 이완근, 앞의 글, 760쪽.

62) 이러한 방식을 찬성하는 입장으로는 이완근, 앞의 글, 763쪽. SIAC(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2016년 중재규칙 제35조 제1항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시 중재비용의 총 액수를 명시하고 당사자 사이에 중재비용의 부담비율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3) 小山昇, 앞의 책, 288쪽.

4. 집행결정

중재법 제37조 제2항은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법원이 허가하여야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⁶⁴⁾ 집행결정은 집행력이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다. 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중재판정은 집행결정과 합체되어 집행권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복합적 집행권원이 되는데, 이를 합체설이라고 한다).⁶⁵⁾

V. 마치며

중재절차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당사자 사이의 분담이 정하여지기 위한 전제가 되는 중재비용의 범위, 당사자 사이에서의 중재비용의 분담, 중재비용의 확정과 상환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분쟁해결절차로 중재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소액의 분쟁은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중재의 이용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여도 될 만한 큰 청구액의 사건에서 중재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 중재절차의 이용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의 필요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중재비용의 고액화를 배경으로 중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제3자가 일단 부담하고 중재 등에 의하여 이용자가 획득한 배상금 등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제3자 자금제공, 이른바 TPF(Third Party Funding)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⁶⁶⁾

64) 그런데 중재법 제39조 제1항은 국내 중재판정과 외국 중재판정을 구별하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약칭으로 UN협약 또는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협약을 적용받은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하여 중재법은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시보다 과중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한편, 우리나라는 위 협약을 가입하면서(1973년에 가입) 상호주의와 당사유보를 선언하였으므로 위 협약의 체약국을 중재지로 하는 외국 중재판정 가운데 우리법상 상사관련 분쟁에 한하여 위 협약을 적용하지만, 위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이원적으로 중재법 제39조 제2항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하는 규율을 하고 있다.

65) 일본 민사집행법 제22조 제6호의2는 확정된 집행결정이 있는 중재판정을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66) 이에 관하여는 전성재, “제3자 자금제공에 관한 소고-중재시장의 활로를 찾아서-”, 「법조」 제66권 제6호, 법조협회, 2017. 12, 38쪽 이하 참조. 물론 TPF와 관련하여 변호사법과의 관계도 문제될 수 있다. 홍콩국제중재센터(HKCIAC) 2019년 중재규칙(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제34조 제4항은 중재판정부는 중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판단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체결한 제3자 자금제공계약을 참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단행본]

- 김갑유 외 3인, 중재실무강의(개정판), 박영사, 2016.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2권, 박영사, 2019.
 임성우, 국제중재, 박영사, 2016.

[논문]

- 김영주, “2019년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중재제도의 개혁동향”, 「중재연구」 제29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9. 6.
 김홍규, “변호사보수가 중재비용에 산입되느냐에 대한 중재사례 해설”, 「중재」 312호, 대한상사중재원, 2004. 6.
 이완근, “상사비용회수와 그 문제점”, 「동아법학」 제54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
 李鎬元, “國際商事紛争の解決方法としての國際仲裁について - 國際仲裁手続の流れと國際仲裁の利点・問題点の検討を中心にして -”, 「法経論集」 제214호, 愛知大學法學會, 2018. 3.
 전병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간의 검토”, 「민사소송」 제13권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9. 11.
 전성재, “제3자 자금제공에 관한 소고-중재시장의 활로를 찾아서-”, 「법조」 제66권제6호, 법조협회, 2017. 12.

[자료]

- 강병근, 중재비용 규정 신설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2.
 대한상사중재원, 2016 국제중재규칙 해설서, 2018.
 법무법인 화우, 국내중재규칙상의 변호사보수의 중재비용 산입 및 판단기준 검토, 2017.

II. 외국문헌

[단행본]

- 近藤昌昭 외 4인, 「仲裁法コンメンタール」, 商事法務, 2003.
 金子宏直, 「民事訴訟費用の負担原則」, 勁草書房, 1998.
 三木浩一/山本和彦, 「新仲裁法の理論と実務」, 有斐閣, 2006.
 小島武司/高桑昭, 「注釈と論点 仲裁法」, 青林書院, 2007.
 小島武司/猪股孝史, 「仲裁法」, 日本評論社, 2014.

小山昇, 「仲裁法[新版]」, 有斐閣, 1983.

中村達也, 「仲裁法の論点」, 成文堂, 2017.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econd Edition, 2014.

Gary B. Born,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2012.

John Choong, Mark Mangan, and Nicholas Lingard, A Guide to the SIAC Arbitration Rules, Second Edition, 2018.

Musielak, ZPO(16. Aufl.), 2019

Saenger, ZPO(8. Aufl.), 2019.

Commission Report: Decision on Cost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5.

Queens Mary University of London,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8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8.

논문 투고일: 2019.10.31

심사 완료일: 2019.11.29

게재 확정일: 2019.12.05

[Abstract]

An Overview on Arbitration Costs

Byung-Seo Chon*

Costs are incurred throughout the process of arbitration as it does throughout litigation. Usually, parties need to pay for ① fees and expenses of the arbitrators, ② the cost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③ and any other extra costs required throughout the arbitral proceeding.

The 2016 amended Arbitration Act newly inserted Article 34-2 (Allocation of Arbitration Cost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may determine the allocation of costs of arbitration incurred in the arbitral proceeding, considering all circumstances of the relevant arbitration case.” However, the way to determine the scope of arbitration costs is still unclear due to the vague prescription, which in fact should be decided beforehand in order to allocate the cost between the parties.

Arbitration costs are rising as a major issue throughout the arbitral process,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total costs itself as well as the costs that can be reimbursed, and the lack of a governing schedule for cost allocation between each parties.

This paper is an overview on the cost allocation between each parties, the scope of arbitration costs as its prior issue, and the determination of costs and returns, across a number of relevant arbitration regulations.

Key Words: Arbitration Act, Arbitration Costs, Fees and Expenses of the Arbitrators, Attorneys' Fees, Allocation of Arbitration Costs, Loser Pays Rule, KCAB Domestic Arbitration Rules

* Professor, Law school, Chungang University